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2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이성권 · 서일준

이만희 • 김기현 • 박성훈

김용태 • 주호영 • 신동욱

한기호 • 박정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,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

한편 사기 범죄에 대한 기소 전 범죄수익을 추적하거나 몰수 또는 보전을 위해서는 경찰이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하지 만 현행법상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. 특히 최근에는 피의자가 차명재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차명재산에 대한 추정보전을 위해 증여세 납부내역 등 과세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을 신

청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13제1항). 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13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·추징보전명령 신청 목적으로 과세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1조의13(비밀 유지) ① 세무공	제81조의13(비밀 유지) ①		
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			
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			
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			
과·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			
한 자료 등(이하 "과세정보"라			
한다)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			
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			
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	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			
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			
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9.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·		
	추징보전명령 신청 목적으로		
	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		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